#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

○ 조 사 명 : 2023년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(부산의료원)

○ 조 사 기 간 : 2023. 8. 20. ~ 8. 25.

○ 처분통보일자 : 2023. 11. 1.

**【본처분】**

| 연번 | 제 목 | 처분요구내용 | 담당부서 | 처분요구 요지 | 처 리 결 과 | 완결여부 | 미결사유 및 조치계획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외부심사위원 구성 비율 미준수 | 주의 | 총무과 | 【행정상】<br>직원채용 면접전형에서 위촉된 외부심사위원이 갑작스런 미참석에 대비하여 예비위원을 두는 등 위원비율(1/2이상)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것 | 【행정상】<br>직원채용 면접전형에서 외부심사위원 비율(1/2이상) 이 충족되도록 채용 절차 이행 | 완결 | |
| | | | | 【신분상】<br>주의3 | 【신분상】<br>주의3 | 완결 | |
| 2 |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및 동점자 처리 기준 부적정 | 주의 통보 | 총무과 | 【행정상】<br>▷ 채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와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지원과 관련된 법률 준수를 위하여 채용계획 수립 및 공고 시 가점 기준을 대상자별로 명확히 기재할 것<br>▷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채용 계획 및 공고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 | 【행정상】<br>▷ 채용 공고문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대상자를 구분하여 가점 기준 명시<br>▷ 채용 공고문에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있을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우선으로 명시 | 완결 | |

【현지조치】

| 연번 | 제 목 | 처분요구내용 | 담당부서 | 처분요구 요 지 | 처 리 결 과 | 완결여부 | 미결사유 및 조치계획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특별채용 등 규정 미정비 | 개선 | 총무과 | 【행정상】<br>채용의 공정성 확보 및 채용 비리 가능성 차단을 위해 「인사규정」등에 잔존한 특별채용 관련 규정을 출자출연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 | 【행정상】<br>본원 「인사규정」 제15조 제4항의 특별채용 관련 규정 개정 ('23.10.27 개정) | 완결 | |
| 2 |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 자체 규정 반영 소홀 | 개선 | 총무과 | 【행정상】<br>채용비위 피해자 발생 시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로 채용비위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도록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을 자체 규정에 반영할 것 | 【행정상】<br>본원 「인사규정」 제18조의 2 (채용비리 피해자 구제) 관련 규정 신설 ('23.10.27 개정) | 완결 | |
| 3 | 채용계획 사전협의 소홀 | 주의 | 총무과 | 【행정상】<br>채용계획에 대해 인사조직 지침에 따른 사전협의 기준일(15일)을 준수하여 주시고 진료공백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 충원이 빈번할 경우에는 사전협의 통보가 15일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부산시(보건위생과)의 사전동의를 얻어 두는 등 채용절차를 준수할 것 | 【행정상】<br>부산시와 사전협의 준수 | 완결 | |
| 4 | 경력경쟁시험 사전공개 소홀 | 주의 | 총무과 | 【행정상】<br>경력경쟁으로 직원을 채용할 경우 채용계획 등이 공고 전 임의변경 되지 않도록 사전공개 절차를 준수할 것 | 【행정상】<br>경력경쟁 대상이 있을 경우 의료원 홈페이지에 사전 게시 | 완결 | |
| 5 | 응시작격 내부규정 개정 소홀 | 개선 | 총무과 | 【행정상】<br>인사규정의 임용자격 요건에 대해 현재 변경된 용어로 개정할 것 | 【행정상】<br>임용자격 요건 관련 인사규정 【별표2】 개정 (2023.10.27. 개정) | 완결 | |